

#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89,664,866	32,689,946
일반회계	754,513,417	22,635,403
특별회계	335,151,449	10,054,543
공기업특별회계	139,264,037	4,177,921
상수도사업	55,632,897	1,668,987
하수도사업	83,631,140	2,508,934
기타특별회계	195,887,412	5,876,622
공유재산관리	31,550,811	946,524
의료급여기금	3,842,515	115,275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115,000	33,4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210,256	36,308
도시재정비촉진	12,896,000	386,880
도시개발	21,640,185	649,206
기반시설	1,799,520	53,986
교통사업	27,893,584	836,808
도시철도건설사업	93,939,541	2,818,18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207,64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